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588
------	------

2025. 6. 19.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3월 31일, 김경 의원 등 12명
2.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3.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2025. 6. 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경 의원)

1. 제안이유

- 불요불급하거나 연 개최 횟수가 기준보다 미달하면 위원회를 상설이 아닌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최 실적이 미비하여 조직담당관으로부터 매년 위원회 비상설화를 권고받은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발의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운영을 비상설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 사항 개정(안 제14조 제1항 및 제3항)
- 나. 위원회 비상설에 따른 실무위원회 삭제 및 위원회 관련 조례 준용(안 제14조제5항 및 제6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III. 검토의견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회의 실적이 미비하여 조직담당관으로부터 비상설화를 권고받은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발의됨.

2.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현황

-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와 「서울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집적도가 높은 업종이나 전략업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있음.
- 이러한 진흥지구는 자치구가 서울시에 대상지 선정 신청과 진흥계획을 제출하면 서울특별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지정·고시됨.
- 한편, 심의위원회는 동 조례 제14조에 따라 ▶진흥지구 지정대상지의 선정·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진흥지구의 변경과 해제에 관한 사항,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진흥계획의 수행실태 등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함.

제14조(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① 시장은 진흥지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이하 “진흥지구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지구 지정대상지의 선정·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진흥지구의 변경과 해제에 관한 사항
 3.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4. 진흥계획의 수행실태 등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시장이 진흥지구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종합지원센터의 조성 및 산업 활성화 프로그램의 지원이 가능해지고, 용적률과 높이 제한 완화, 사업자 자금 융자, 부동산 세제감면의 혜택이 부여됨.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사업 개요>

- 지정대상: 타 업종에 비해 집적도가 높거나 전략업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지정요건: 면적 8천㎡ 이상으로, 아래 표에 명시된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직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장업종 종사자 수가 서울시 해당업종 종사자 수의 1% 이상 ◦ 공장부지 비율이 전체 대상지 면적 30% 이상
성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면적 기준, 단위면적당 권장업종 종사자수가 서울시의 2배 이상이고, 권장업종 지역내 최근 5년간 성장률이 '0'보다 큰 지역 ◦ 권장업종 사업체가 10개 이상이고, 권장업종 지역 내 최근 5년간 성장률이 100% 이상 지역
전략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특별히 인정하는 지역

• 지정권자: 서울시장

- 지정절차: ①대상지 선정 신청(자치구) → ②진흥계획 심사(경제실) → ③진흥계획 수립 및 진흥지구 지정 결정·고시(진흥지구심의위원회) → ④지구단위계획 수립(도시공간본부)

• 지원내용:

- 종합지원센터(앵커시설) 조성 및 산업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 권장업종시설 도시계획 행위제한 완화(용적률 120% 이내, 높이제한 120% 이내 등)
- 권장업종 영위 사업자 자금융자(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 권장업종 사용 부동산 세제감면(취득세 50%, 재산세 50%)

- 당초 진흥지구 신청은 구청장만 가능하여 서울시는 구청의 협조가 없으면 전략산업 육성 등의 추진이 불가능했고, 진흥지구 지정 후 진흥계획이 마련되는 등 절차적 문제도 발생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과 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3년 4월 동 조례가 개정된 바 있음.
- 그리고 조례 개정 후 따라 진흥지구 지정 심사 전에 진흥계획이 먼저 수립

되어 심의위원회가 대상지 심사 시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효율화되었고, 진흥계획도 주기별(5년단위)로 수립하도록 변경되는 등 심의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내용과 범위가 증가하였음.

- 현재 서울시에는 총 8곳이 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이 중 종로 귀금속 진흥지구 등 6개 진흥지구에 대한 진흥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동대문 한방 진흥지구는 인근 전통시장과 협의 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예정임.
- 참고로 중구 인쇄 진흥지구는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 계획 등에 따라 산업체 및 관련 종사자 이전 등이 진행되고 있어 진흥계획이 보류되었고, 중구 금융 진흥지구는 여의도가 법에서 정한 금융중심지로서 활성화가 요구되면서 진흥계획 추진이 중단된 상태임.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현황>

유형	지구명	위 치	면적(㎡)	대상지 선정일	지구지정	진흥계획	지구단위 계획
특정	종로 귀금속	묘동 53번지 일대	140,855	2009.4.24.	2010.1.28.	2013.01.03.	2016.07.21
산업	성수 IT	성수동2가 일대	539,406	2009.4.24.	2010.1.28.	2013.01.03.	2021.10.14
특정	마포 디자인출판	서교동 395번지 일대	746,994	2009.4.24.	2010.1.28.	2013.01.03.	2016.04.28
"	동대문 한방	용두동, 제기동 일대	211,355	2010.6.3.	2013.7.26.	2023.09.15.	-
"	면목 패션	면목동 136번지 일대	292,000	2010.6.3.	2016.4.28.	2017.07.24.	2022.01.26.
"	여의도 금융	여의도동 22번지 일대	387,469	2009.4.24.	2010.1.28.	2023.03.16.	2024.11.14
"	중구 인쇄	충무로 4, 5가 일대	303,240	2010.6.3.	2017.7.13.	추진보류	-
"	중구 금융	삼각동 50-1번지 일대	281,330	2009.4.24	2010.1.28.	추진중단	-

3. 개정안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최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의 비상설화 원칙을 적용하고, ② 개최 실적이 미비하여 조직담당관으로부터 매년 비상설화를 권고받은 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기 위해 발의된 것임.

- 먼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될 것이 예상되는 위원회 등에 한해 예외를 두고 있음.

<p>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p> <p>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②생략</p> <p>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비상설(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 2. 위원회의 회의가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될 것이 예상되어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안건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심의위원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 2022년 1회, ▶ 2023년 3회, ▶ 2024년 2회가 개최되어 심의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부진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도 2023년과 2024년에 위원회 정비·운영 개선계획을 통해 비상설화를 권고한 만큼 조례 개정에도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p>위원회 정비·운영 개선계획 ‘정비기준’</p> <p>비상설 : 목적 기능상 운영이 필요하지만,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폐 지 : 행정여건 변화, 설치목적 달성 등으로 운영필요성이 저하된 위원회 통 합 : 다른 위원회와 설치 목적과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p>															
<p>최근 3년간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개최 현황</p>															
<table border="1"> <thead> <tr> <th>개최일</th> <th>안건</th> </tr> </thead> <tbody> <tr> <td>2024.10.07.</td> <td>- 양재개포 ICT진흥계획 보완 심의 - 관악S밸리 R&D 진흥지구 대상지 선정</td> </tr> <tr> <td>2024.05.29.</td> <td>- 실무위원회 운영방법(비상설 운영) - 양재개포ICT 진흥계획 심의 - 진흥지구 23년 운영실적 평가</td> </tr> <tr> <td>2023.08.31.</td> <td>- 홍릉바이오 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 서울약령시 한방지구 진흥계획 심의</td> </tr> <tr> <td>2023.04.20.</td> <td>- 진흥지구 22년 운영실적 평가</td> </tr> <tr> <td>2023.02.28.</td> <td>- 여의도 금융지구 진흥계획 - 개포4동 ICT지구 대상지 선정 - 강남디자인/마포웨딩지구 대상지선정 취소</td> </tr> <tr> <td>2022.05.23.</td> <td>- 진흥지구 21년 운영실적 평가</td> </tr> </tbody> </table>	개최일	안건	2024.10.07.	- 양재개포 ICT진흥계획 보완 심의 - 관악S밸리 R&D 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2024.05.29.	- 실무위원회 운영방법(비상설 운영) - 양재개포ICT 진흥계획 심의 - 진흥지구 23년 운영실적 평가	2023.08.31.	- 홍릉바이오 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 서울약령시 한방지구 진흥계획 심의	2023.04.20.	- 진흥지구 22년 운영실적 평가	2023.02.28.	- 여의도 금융지구 진흥계획 - 개포4동 ICT지구 대상지 선정 - 강남디자인/마포웨딩지구 대상지선정 취소	2022.05.23.	- 진흥지구 21년 운영실적 평가	
개최일	안건														
2024.10.07.	- 양재개포 ICT진흥계획 보완 심의 - 관악S밸리 R&D 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2024.05.29.	- 실무위원회 운영방법(비상설 운영) - 양재개포ICT 진흥계획 심의 - 진흥지구 23년 운영실적 평가														
2023.08.31.	- 홍릉바이오 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 서울약령시 한방지구 진흥계획 심의														
2023.04.20.	- 진흥지구 22년 운영실적 평가														
2023.02.28.	- 여의도 금융지구 진흥계획 - 개포4동 ICT지구 대상지 선정 - 강남디자인/마포웨딩지구 대상지선정 취소														
2022.05.23.	- 진흥지구 21년 운영실적 평가														

- 다만 2023년 4월 동 조례의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되었고, 금년의 경우 5월까지 이미 회의가 2회 개최되었으며, 대부분의 진흥지구가 진흥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되어 새로운 진흥계획의 수립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심의위원회의 개최 횟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심의위원회의 비상설화에 따른 기능 축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588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김 경, 김기덕, 민병주,
박승진, 송재혁, 아이수루,
왕정순, 유정인, 유정희,
이용균, 임규호, 한 신,
홍국표 의원(13명)

1. 제안이유

- 불요불급하거나 연 개최 횟수가 기준보다 미달하면 위원회를 상설이 아닌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최 실적이 미비하여 조직담당관으로부터 매년 위원회 비상설화를 권고 받은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발의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운영을 비상설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 사항 개정(안 제14조 제1항 및 제3항)
- 나. 위원회 비상설에 따른 실무위원회 삭제 및 위원회 관련 조례 준용(안 제14조제5항 및 제6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하여 소집한다.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7항) 본문 중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을 “위원”으로, “안에서”를 “안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이 조례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진흥지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이하 “진흥지구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 5. (생략)</p> <p>② (생략)</p> <p>③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u></p> <p>④ <u>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u></p> <p>⑤ (생략)</p> <p>⑥ <u>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심의 등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된</u></p>	<p>제14조(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 ----- ----- ----- ----- ----- <u>둘 수</u> <u>있다.</u></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하여 소집한다.</u></p> <p><u><삭 제></u></p> <p>④ (현행 제5항과 같음)</p> <p>⑥ <u>이 조례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u></p>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⑦ 시장은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

----- 위원-----

----- 안에서 「서울특별시 위

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 <단서 삭제>

제>

<삭 제>

<삭 제>

대행한다.

⑩ · ⑪ (생략)

⑧ · ⑨ (현행 제10항 및 제11항
과 같음)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비상설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참고로 위원회 운영 시 소요되는 비용변화(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를 검토¹⁾하였으나 서울시 관련 부서(경제실 산업입지과) 문의 및 각종 정보확인 결과 별다른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연간 정례적 운영비 소요 → 안전량에 따른 운영비 소요] 서울시 관련부서(경제실 산업입지과) 문의결과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는 평균 2회(2024년 2회, 2023년 3회, 2022년 1회) 정도로 향후 안전 발생 빈도가 지금과 같은 추이일 경우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도 이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향후 진흥지구 관련된 사항심의 요구가 늘어나 안전이 증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의 여지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안전 증가를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요소가 없어 고려사항에서 제외함